



2015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가”군)



2014. 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http://law.snu.ac.kr>

<http://admission.snu.ac.kr>

입 학 전 형 일 정 표

|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
| 입학지원서 접수(인터넷) | 2014. 10. 6.(월) 9:00 ~ 10. 10.(금) 18:00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http://admission.snu.ac.kr)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nu.ac.kr) | 인터넷접수 만 시행 |
| 지원서류 제출 | 2014. 10. 6.(월) 10:00 ~ 10. 13.(월) 17:00 |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서류 접수처 (15동206호, 02-880-7539)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 특별전형 면접대상자 발표 | 2014. 10. 31.(금) 18:00 이후 |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nu.ac.kr) | |
| 특별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 2014. 11. 3.(월)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11. 6.(목) 18:00 이후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http://admission.snu.ac.kr)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nu.ac.kr) | |
| 일반전형 면접대상자 발표 | 2014. 11. 11.(화) 18:00 이후 |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nu.ac.kr) | |
|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 2014. 11. 14.(금) ~ 11. 15.(토)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합격자 발표 | 2014. 12. 11.(목) 18:00 이후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http://admission.snu.ac.kr)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nu.ac.kr) | |
| 합격자 등록 | 2015. 1. 5.(월) ~ 1. 6.(화) | | |
| 1차 추가합격자 발표 (결원 시) | 2015. 1. 9.(금) | | |
| 1차 추가합격자 등록 | 2015. 1. 12.(월) ~ 1. 13.(화) | | |
| 2차 추가합격자 발표 (결원 시) | 2015. 1월 중 | | 추후공고 |

※ 전형일정 및 세부사항은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차 례

| | |
|------------------------|----|
|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1 |
| 2. 지원자격 | 1 |
| 가. 일반전형 | 1 |
| 나. 특별전형 | 2 |
| 3. 전형방법 | 4 |
| 가. 전형요소 및 배점 | 4 |
| 나. 평가·선발 방법 | 4 |
| 다. 선발절차 | 5 |
| 4. 지원서 접수 | 6 |
| 5. 제출서류 | 6 |
| 가. 공통서류 | 6 |
| 나. 특별전형 지원자 증빙서류 | 7 |
| 6. 동점자 처리기준 | 9 |
| 7.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9 |
| 8. 추가합격자 선발 | 9 |
| 9. 입학전형료 반환 | 9 |
| 10. 유의사항 | 10 |
| 11. 이의신청 | 11 |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학위과정 | 모집단위 | 모집구분 | 모집인원 | 비 고 |
|------|------|------|---------|----------------------------|
| 석 사 | 법학과 | 특별전형 | 9명 이상 | 총 입학정원(150명)의 6%이상 |
| | | 일반전형 | 141명 이내 | 총 입학정원에서 특별전형 합격자수를 제외한 인원 |

※ 모집인원은 2014학년도에 발생한 결원인원(정원외 선발, 입학정원의 10%이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2.

지원자격

가. 일반전형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5년 2월까지(일본 등 3월에 졸업하는 외국 대학 졸업자는 3월까지)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지원서 접수 마감일(2014.10.10.) 기준 1년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적성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자
- 3) TEPS 또는 TOEFL 정기시험에서 아래의 성적을 취득한 자

| 구 분 | 점 수 | 비 고 | |
|-------|---------|--|---------|
| TEPS | 701점 이상 | ※ 지원서 접수마감일(2014. 10. 10.) 기준 2년 이내 취득하여, 서류제출일 2014. 10. 13.(월) 까지 성적을 제출한 경우 [단, TEPS는 제159회(2012. 10. 7.) - 제190회(2014. 9. 27.) 정기시험]로서, 입학지원서에 기재한 성적만 유효함 | |
| TOEFL | IBT | | 99점 이상 |
| | PBT | | 597점 이상 |

※ 영어권 대학(원)에서 학사학위 이상(LL.M., MBA 등 포함)을 취득한 자는 TEPS 또는 TOEFL 성적 제출을 면제함

나. 특별전형…………… 1)의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2)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대상자

- 가) 특수교육대상자(1급-3급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록)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1급-3급)이 되어 있는 자
- 나)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 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5조의2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동법 제2조 제11호, 동 시행령 제3조의2의 차상위 계층 해당자의 가구(인정기준은 3쪽 참고)
- 라) 농·어촌지역출신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졸업생은 제외함)로서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
- 마)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

※ 라) 농·어촌지역출신자, 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함

- 본인·배우자·부모 포함 가구 구성원 전부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이 각 해당 연도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의 3배 미만(건강보험료 기준은 3쪽 참고)
- 본인·배우자·부모의 최근 3년간 재산세 총 납부액(과세특례분 포함)이 연간 30만원 이하

2) 지원요건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5년 2월까지(일본 등 3월에 졸업하는 외국 대학 졸업자는 3월까지)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나) 지원서 접수 마감일(2014.10.10) 기준 1년 이내에 적성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자
- 다) TEPS 또는 TOEFL 정기시험에서 성적을 취득한 자

| 구 분 | | 접 수 | 비 고 |
|-------|-----|---------|--|
| TOEFL | IBT | 성적제한 없음 | ※ 지원서 접수마감일(2014. 10. 10.) 기준 2년 이내 취득하여, 서류제출일 2014. 10. 13.(월) 까지 성적을 제출한 경우 [단, TEPS는 제159회(2012. 10. 7.) - 제190회(2014. 9. 27.) 정기시험]로서, 입학지원서에 기재한 성적만 유효함 |
| | PBT | | |

※ 영어권 대학(원)에서 학사학위 이상(LL.M., MBA 등 포함)을 취득한 자는 TEPS 또는 TOEFL 성적 제출을 면제함

※ 특별전형 차상위계층 인정기준(특별전형 다. 항) …………… 아래 1.~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속한 자
2.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속한 자

※ 특별전형 연도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특별전형 라,마 항 적용)

▣ 2014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최저생계비(A)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35,925 |
| 소득인정액(A×1.2) | 724,084 | 1,232,900 | 1,594,942 | 1,956,984 | 2,319,026 | 2,681,068 | 3,043,110 |
| 보험료(A×1.2×0.02995) | 21,686 | 36,925 | 47,769 | 58,612 | 69,455 | 80,298 | 91,141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 가구 : 2,837,627원)

▣ 2013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최저생계비(A)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2,404,650 |
| 소득인정액(A×1.2) | 686,602 | 1,169,077 | 1,512,378 | 1,855,679 | 2,198,978 | 2,542,279 | 2,885,580 |
| 보험료(A×1.2×0.02945) | 20,220 | 34,429 | 44,540 | 54,650 | 64,760 | 74,870 | 84,980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 가구 : 2,690,734원)

▣ 2012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 최저생계비(A)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 소득인정액(A×1.2) | 664,025 | 1,130,636 | 1,462,648 | 1,794,660 | 2,126,672 |
| 보험료(A×1.2×0.029) | 19,257 | 32,788 | 42,417 | 52,045 | 61,673 |

※ 6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6인 가구: 2,048,904원)

▣ 2011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최저생계비(A)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 소득인정액(A×1.2) | 639,100 | 1,088,196 | 1,407,745 | 1,727,296 | 2,046,845 | 2,366,394 | 2,685,944 |
| 보험료(A×1.2×0.0282) | 18,023 | 30,687 | 39,698 | 48,710 | 57,721 | 66,732 | 75,744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대한 심사는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실시함
- 건강보험료 확인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배점

| 구 분 | | 서류평가 (1단계 전형) | | 면접 및 구술고사 (2단계 전형) | 총 점 | |
|---------|------|------------------|------|-----------------------|--------|------|
| 특 별 전 형 | | 적성시험 | 80점 | 300점 | 100점 | 400점 |
| | | 학업성적 | 100점 | | | |
| | | 정성평가 | 120점 | | | |
| 일 반 전 형 | 우선선발 | 적성시험 | 80점 | 300점 | 적격/부적격 | 300점 |
| | | 학업성적 | 100점 | | | |
| | | 정성평가 | 120점 | | | |
| | 심층선발 | 적성시험 | 80점 | 300점 | 200점 | 500점 |
| | | 학업성적 | 100점 | | | |
| | | 정성평가 | 120점 | | | |

나. 평가·선발 방법

- 1) 우리 대학 관련규정, 사정원칙에 따라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종합하여 평가함.
- 2) 서류평가는 적성시험, 학업성적, 정성평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출된 모든 서류를 평가함.
 - 적성시험은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두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을 반영하며, 논술점수는 면접 및 구술고사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됨(논술지문이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아님).
 - 학업성적은 학사과정 성적만 평가하며 둘 이상의 학사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지원자가 선택한 학사과정의 성적을 평가함.
 - 정성평가
 - 외국어 능력은 영어성적으로 제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평가함. 영어성적은 원칙적으로 지원기준으로만 활용되며, 예외적으로 영어성적이 우수한 지원자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함. 또한 지원자가 부가적으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에 취득한 제2외국어(한자 포함)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에 참고함.
 -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및 경력계획서를 평가에 반영함.
 -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은 대학입학 이후 경력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함.
- 3) 면접 및 구술고사는 법학수학능력 및 법률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등을 평가하되, 법학지식은 평가하지 않음.
- 4) 비법학사 선발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 시행령 및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입학정원의 3분의 1 이상은 비(非)법학사를 선발함.
 - ※ 지원자가 법학사를 포함하여 복수학위를 취득한 경우 온라인상 지원서 작성시 법학사/비법학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은 이 선택에 따라 법학사 여부를 판단함.

비법학사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단함.

5)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선발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 시행령 및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입학정원의 3분의 1 이상은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를 선발함.('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라 함은 서울대학교가 아닌 대학교의 학부로부터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임)

※ 서로 다른 학교 간의 일반 편입 및 학사 편입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졸업 대학을 기준으로 함.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해당 여부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관련내용을 심의·결정함.

6) 지원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선발절차

1) 특별전형

- 서류평가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인원을 면접 및 구술고사 대상자로 선정함.
-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 특별전형에서 불합격(예비합격 포함)한 특별전형 지원자가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영어성적 기준 등을 만족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절차 없이 일반전형 지원자에 포함시켜 다시 평가함.

2) 일반전형

• 우선선발

서류평가 성적으로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인원을 우선 선발한 후 당락 여부만을 결정하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실시하여 합격자를 우선 선발함.

• 심층선발

일반전형 모집인원에서 우선선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인원을 심층선발 대상자로 선정한 후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실시하여 서류평가 성적과 합산한 성적이 높은 순으로 우선선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선발함.

3) 2014학년도에 발생한 결원인원(정원 외 인원) 선발

- 별도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
-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구별하여 결원을 충원함.
-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함.

4. | 지원서 접수

가. 일 시 : 2014. 10. 6.(월) 9:00 ~ 10. 10.(금) 18:00

나. 전형료 : 10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가 부담함

※ 특별전형 지원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는 전형료(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포함)를 면제함

※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제외) 지원자 중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전형료 일부(30,000원)를 환불

다. 접수방법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http://admission.snu.ac.kr>)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nu.ac.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라. 주의사항

- 1) 반드시 지원서 접수마감일 2014. 10. 10.(금) 18:00까지 전형료를 결제하여야 접수가 인정됨.
- 2) 전형료 결제가 완료되면 지원서 수정은 불가능함.
- 3) 입학지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아래 '5. 제출서류'항과 같이 지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한 자는 결격처리 됨.

5. |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공통 제출 서류명 | 일반전형 | 특별전형 |
|--|------|------|
| 1.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한 입학지원서 1부(반드시 컬러로 출력) | ○ | ○ |
| 2. 학사과정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편입학의 경력이 있는 경우, 모든 전적 대학의 성적표 * 외국에서 학부를 졸업한 자는 학점체계(성적평점환산기준 포함), 지원자의 학점취득에 대한 설명서 및 <u>학력조회동의서</u> 제출 | ○ | ○ |
| 3. 대학원 재학(졸업)시 대학원과정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 | ○ |
| 4.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1부 | ○ | ○ |
| 5. 자기소개 및 경력계획서 1부 - 인터넷 접수후 출력하여 별도제출 - 종전 사회활동 및 경력증명서는 이 서식에 통합되었음 - 사회활동 및 경력관련 증빙서류는 별도제출 | ○ | ○ |
| 6. 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소정기간에 취득한 TOEFL 또는 TEPS 성적증명서 1부 - 참고서류 :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능력 증빙서류(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취득한 시험점수 등) | ○ | ○ |
| 7. 특별전형 지원자의 경우 특별전형 지원 자격 증빙서류 * 아래 '나'항 참조 | × | ○ |

| | | |
|--|---|---|
| 8. 기타 제출 가능 서류 - 전년도에 응시한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함) | ○ | ○ |
| 9. 기타 제출 서류 - 졸업 혹은 재학 중인 대학의 학적부 사본 1부(원본대조확인필)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징벌사항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 | ○ |

나. 특별전형 지원자 증빙서류

| 지원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등 |
|----------------------|---|---|
| 특수교육 대상자 (1급~3급 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3급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입학전형 공고일자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함) 1부 복지카드 사본 1부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양식자유, 1면 이내)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가유공자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양식자유, 1면 이내) | 보훈처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양식자유, 1면 이내) | 읍·면·동 주민센터 |
| 차상위 계층 | 복지급여수급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확인서) |
| | 우선돌봄차상위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주민센터 |
| 농·어촌 지역 출신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교 교육과정 졸업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본인, 배우자, 부모 포함 가구원 전부, 마감일 기준 3년분(2011년 10월 ~ 2014년 9월)] 및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재산세(국세·지방세) 과세(납세)증명서(본인, 배우자, 부모 포함, 마감일 기준 3년 실적) 1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본인, 배우자, 부모 포함, 마감일 기준 3년 실적) 1부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서/국세청 |

| | | |
|-------------------|---|--|
| 농·어촌 지역 출신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 소득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서), 부채증명서(금융기관) 중 해당 서류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장애등급 기재) •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양식자유, 1면 이내) | 세무서 읍면동주민센터 |
| 북한이탈 주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학력인정확인서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본인, 배우자, 부모 포함 가구원 전부, 마감일 기준 3년분(2011년 10월 ~ 2014년 9월)] 및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재산세(국세·지방세) 과세(납세)증명서(본인, 배우자, 부모 포함, 마감일 기준 3년 실적) 1부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본인, 배우자, 부모 포함, 마감일 기준 3년 실적) 1부 •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 소득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서), 부채증명서(금융기관) 중 해당 서류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장애등급 기재) •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양식자유, 1면 이내) | 통일부/ 읍면동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 읍면동주민센터 세무서/국세청 세무서 읍면동주민센터 |

- ※ 모든 증빙서류는 입학전형 공고일자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단,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원서접수 시 **작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납부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증명서를 제출
- ※ 특별전형 지원자 자신이 특별전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
- ※ 입학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자격인정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제출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 02-880-7539)

라. 제출기한 : 2014. 10. 6.(월) 10:00 ~ 10. 13.(월) 17:00까지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 (2014. 10. 10일자 우체국소인까지 유효함)
- 주소 : 151-743,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5동 206호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입학전형담당자

바. 제출 시 유의사항

- 1) 추천서는 접수하지 않음.
- 2)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 대조를 할 수 있어야 함.
- 3)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 4) 제출서류는 위 제출 목록의 순서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6. 동점자 처리기준

- 가. 서류평가 전형총점이 상위인 자
- 나. 서류평가 중 정성평가 성적이 상위인 자
- 다. LEET 적성시험 성적이 상위인 자
- 라. 학부 학업성적이 상위인자

7.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일 시

- 특별전형 : 2014. 11. 6.(목) 18:00 이후
- 일반전형 : 2014. 12. 11.(목) 18:00 이후

나. 장 소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http://admission.snu.ac.kr>) 발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 입학 ⇒ 대학원공지사항 ⇒ 성명, 생년월일 및 수험번호로 검색)

다. 합격증교부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http://admission.snu.ac.kr>)에서 출력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 입학 ⇒ 대학원공지사항 ⇒ 성명, 생년월일 및 수험번호로 검색)

라. 합격자등록 : 2014. 1. 5.(월) ~ 1. 6.(화)

※ 해당 기간 내에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

8. 추가합격자 선발

가. 예비합격자 선발

각 전형에서 성적이 높은 순으로 모집인원의 40% 이내의 인원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나. 추가합격자 선발 및 통지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 전형 성적이 높은 순서에 따라 전화로 개별 통지(전화녹음)하여 본인의 등록의사를 확인한 후 합격자를 선발하므로 예비합격자는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기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9. 입학전형료 반환

가. 입학전형료의 반환사유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음(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신설).

-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나. 본인의 귀책이 아닌 위 1)~4)항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응시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본 전형의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합격 발표 이후 신청은 반환하지 않음.
- 다. 원서접수(인터넷접수 포함)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지원자의 귀책사유에는 반환하지 않음.
- 라. 입학전형료 반환신청서 : 별첨

10. 유의사항

- 가. 입학지원서 인터넷 접수 시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돌아가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함.
- 나. 입학지원서를 접수한 지원자는 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14. 10. 13.(월) 17:00까지 서류가 접수장소(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입시서류 접수창구)에 도착하여야 함.(2014. 10. 10일자 우체국소인까지 유효함)
- 다. 입학지원서는 접수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라. 입학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입학 후 학사관리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마. 지원 당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는 졸업증명서를 2015. 3. 2.(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 바. 본 법학전문대학원과 동일한 군(“가”군)에 속하는 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수 지원하거나, 입학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필수적 제출 서류 또는 기재사항의 고의적 누락, 서류의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향후 본 법학전문대학원 및 서울대학교 입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요소(적성시험 성적, 학부성적, 공인어학 성적)를 위·변조한 자는, 당해연도 적성시험 성적이 무효가 되며,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적성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됨.
- 아. 합격자로서 2015년 2월까지(일본 등 3월에 졸업하는 외국대학 졸업자는 3월까지) 신입생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정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정기간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자. 지원자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nu.ac.kr>)의 공고 또는 게시사항 등을 확인하여 제출서류 미비, 고사결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차. 입학고사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단계별 선발 또는 최종 선발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타. 입학 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다만, 사법시험, 기타 시험 준비, 직장근무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파. 모집안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학칙 및 규정,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 일반 원칙에 따라 결정·시행함.
- 하. 그 이외의 세부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02-880-7539)에 문의.

11. | 이의신청

입학전형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복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관련법령,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사정원칙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진행함.